

● 제301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(의안번호 : 2482)

2021. 6. 21.

보건복지위원회

수석전문위원

【이영실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번호 2482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이영실 의원 발의(외 12명)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05월 28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05월 31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~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음. 초기 목격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율이 3배 이상으로 증가 가능함.
- 또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으며, 심정지가 발생한 후 병원 전 단계의 일반인의 적절한 심폐소생술 시행은 심정지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음.
-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심폐소생술의 대상을 확대하고, 민관협업방안 구축 등을 통해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, 교육계획에 민관 활성화 방안을 명시함. (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)
- 나.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을 완화하고 자함. (안 제7조제2항제3호)
- 다.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하고,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함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첨부)

I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조례안의 취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자 확대, 민관협력체계 방안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심정지 사고로부터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

-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되거나 사고로 폐와 심장의 활동이 정지된 사람에게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가해 심장, 폐 등의 기관으로 혈액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산소가 공급되게 하는 응급처치를 의미함.
- 질병관리청(당시 질병관리본부)과 소방청에서 2006년~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, 2018년도 기준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3만 539건으로, 인구 10만명당 59.5명의 수치임.¹⁾
- 해당 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(‘08년 1.9%→‘17년 21.0%→‘18년 23.5%)하고 있으며,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.9~3.3배, 뇌기능회복률²⁾은

1) 보건복지부,·소방청 보도자료, “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.3배 향상” <2019.11.26.>

약 2.8~6.2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- 병원 밖 심장정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며, 길거리, 공공장소, 운동시설 등 의료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함. 병원 밖 심장정지의 특성상 의료인이 아닌 목격자가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.
- 병원 밖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존여부는 목격자에 의한 심장정지 인지 및 신속한 심폐소생술,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, 자동제세동기의 보급과 현장 사용을 포함한 효율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됨. 특히 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심장정지 상황에서의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심장정지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.³⁾

나. 조례개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

(1)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
- 서울시에서는 이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) 및 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응급처치 교육·홍보계획 수립 등) 와 「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근거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·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.
- 기존 조례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대상을 ‘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’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, 개정조례안에서는 ‘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

2) 뇌기능 회복률 :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

3) 질병관리청·대한심폐소생협회(2020). 「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」.

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'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해 다양한 시민층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행) ① (생 략)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<u>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</u> 3.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<u>교육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홍보</u> 및 상담에 관한 사항 <p><신 설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그 밖에 <u>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조(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· 내용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</u> 3. ----- <u>홍보</u> ----- 4. <u>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</u> 5. ----- <u>심폐소생술 교육에</u> -----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- 2021년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살펴보면, 의무교육대상 외에도 일반교육, 기본교육으로 교육을 구분한 뒤, 각각 그 과정에 적합하도록 교육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〈표〉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별 추진방법

구 분	대 상	목 표	추진방법	교육 시간
전문교육 <small>(의무교육대상 등)</small>	<u>(법 제14조 제1항)</u> · 구급차 등의 운전자 ·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· · 보건교사, 경찰공무원, 인명구조요원, · 보육·유치원교사 등	1만명	권역응급 의료센터	4시간
	<u>(법 제47조2)</u> ·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			100분
	· HEROS 강사 양성과정		응급의료지원단	4시간
일반교육	· 초등학생(고학년), 중·고·대학생 · 군인 · 사회복지사·공무원·요양보호사·경비원 등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	8만명	자치구	80분
	· 초·중등·기타교사(특수교사 포함)	3만명	권역응급 의료센터	
기본교육	· 노인복지관·경로당 · 미취학 어린이, 초등학생(저학년) 등	8만명	자치구	30분
	· 예비군, 등산로, 지역축제 이용자 등		권역응급 의료센터	

-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 시에 포함된 대상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 사항은 없다하겠음.
- 또한, 개정조례안에서는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이미 다양한 행정분야에서民間 분야의 전문성과 참여, 현장성 등이 정책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. 심폐소생술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2006년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등民間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.

-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대해 계획에 명시하도록 하였는데, 이를 통해 보다 민간의 전문성이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(2)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실무인력의 조건완화 (안 제7조)

- 개정안 제7조에서는 기존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배치되도록 하는 실무인력의 조건을 완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,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<u>5년 이상</u> 종사하고 있는 자</p>	<p>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 <u>3년</u></p> <p><u>이상</u> -----</p>

-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「2021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·홍보계획서」에 따르면 이론교육 및 교육운영을 총괄하는 교육 강사는 의사, 간호사·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,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, 본 개정안에서는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- 그러나 동 지침에는 1급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모두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했을 때 주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, 현 조례개정안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종사 년수만 완화되어 있어 제7조 2항에 명시된 간호사 역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하겠음.

(3)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 (안 제9조)

- 해당 조항은 기존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홍보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있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9조(심폐소생술 교육 홍보) 시장은 홍보물,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.</u></p>	<p><u>제9조(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)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</u> <u>2.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</u> <u>3.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</u> <u>4.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한 매체</u>

- 또한, 기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음.
- 자동심장충격기(AED)는 외부에서 자동으로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는 장비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활용할 수 있음. 현재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의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시민들은 그 활용법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.
-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도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3 종합의견

- 응급의료체계는 환자가 발생한 현장-이송-응급실-최종 치료까지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으며, 특히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차지함.
- 특히 급성심장정지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, 2019년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4.7%로 200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. 특히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2019년 기준으로 15%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환자가 6.2%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.⁴⁾

4) 질병관리청 보도자료, “멈춘 심장 되살리는 심폐소생술, 2020년 지침 개정” <2020.12.8.>

- 이처럼 급성심장정지 환자들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,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는 강화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사료됨.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와 홍보의 추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음.

문 의 처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